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고무인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5조제5항)

3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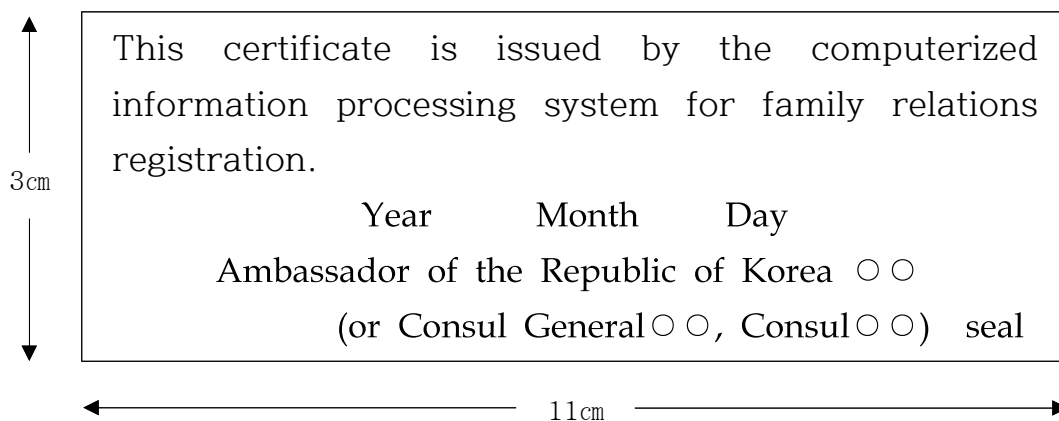
붙임과 같음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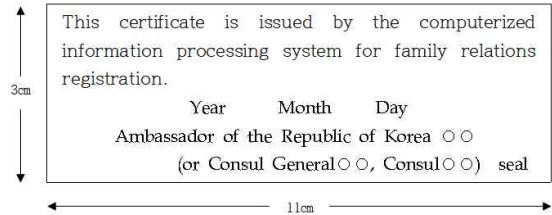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의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.

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 (교부절차) ① ~ ④ (생략) <신설>	제5조 (교부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.
	
⑤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⑦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771